

설계자	확인자		
		설계년월일	2022.06.14.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사업  
타당성조사

# 과업지시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목 차

I. 과업지시서 .....	1
1. 개요 .....	1
2. 과업기간 .....	1
3. 과업내용 .....	2
4. 과업의 일반원칙 .....	8
5. 과업수행 방법 .....	11
6. 과업성과품 제출 .....	11
7. 보안대책 .....	12
II. 예정공정표 .....	15

# I. 과업지시서

## 1. 개 요

□ 과업명 :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사업 타당성조사

### □ 과업목적

-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은 독립영웅(초대 대통령)이자 현총리의 부친인 '방가반두'의 이름을 사용할 만큼 방글라데시 최대 단일 경제구역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중공업까지 관장하는 경제구역으로 개발 중임.
- BSMSN 경제구역의 용수수요량은 2040년 기준 최대 100만<sup>m</sup>³/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주무관청인 BEZA는 약 55만<sup>m</sup>³/일의 용수를 해수담수화 설비로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과도한 운영비와 까다로운 운영관리로 지표수를 활용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하는 경제구역에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수공급시설 신설이 시급한 실정임.
- 따라서, 본 과업은 BSMSN 경제구역의 용수수요량 및 용수공급방안을 검토하고 해수담수화 설비를 대신할 수 있는 용수공급 시설을 계획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재무적타당성, 법률적타당성, 재원조달방법 등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본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사업 제안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3. 과업내용

#### 1) 기초자료 조사

##### 사업환경 분석

- 사업추진 배경, 사업개요(규모, 입지, 기간 등), 사업환경 (주요 경제지표, 산업정책, 인구, 도시, 문화, 지질 등)에 대한 전반적 분석
- BSMSN 경제구역의 인프라 현황 및 계획 조사 등
- 방글라데시 정부의 상수도시설 운영·관리 체계 조사 등
- PPP 사업 등 외국 투자 사업 성공 / 실패 사례조사
- PPP 사업 등 외국 투자 사업 관련 정부예산(정부보조금) 지급현황, 미지급 사례, 지급기준 등 조사
- 사업 대상국의 외채 등 채무현황, 위험관련 사항

##### 현황조사

-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일반현황 조사
- 국가계획 및 도시계획, 지역 관련 개발계획 등 조사
- 자연환경, 사회·경제·문화·환경 현황조사 등

#### 2) 현장조사

##### 공통사항

- 다음의 현장조사 수행 시 기대하는 성과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조사항목, 위치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 필요

##### 측량조사

- 취수장 및 펌프장, 정수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지역 현황측량 시행
- 도수관로 계획노선에 대하여 수도 노선측량 시행

#####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방글라데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
-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 조사위치는 취수장, 정수장, 펌프장 예정부지 및 도수관로 노선

#### □ 수질조사

- 취수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시행
- 조사항목은 방글라데시 규정에 명기된 항목 수행

###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 □ 용수 수요량 및 수질기준 검토

- (용수 수요량) 기수행된 경제구역 마스터플랜과 용수공급계획 등 상위계획들을 비교 검토
- (수질 기준) 방글라데시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경제구역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 수질기준 등을 검토

#### □ 취수방법 및 정수처리 공법 검토 및 선정

- (취수방법) 취수지점의 입지 및 지형 현황, 연간 수위변화,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수방식 선정
- (정수처리 공법) 방글라데시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경제구역 공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을 제시하되 향후 예상되는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비교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처리 공법 선정.

#### □ 슬러지 처리 및 처분계획 제시

- 방글라데시 관련법 및 타 정수장의 사례를 조사하여 정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합리적인 처리 및 처분 방안 검토 제시

#### □ 도수관로 노선 검토 및 선정

- 도수관로 관경 및 노선의 적정성 검토 및 최적 노선 선정
- 도수관로의 동수구배도를 작성하여 펌프장 필요성 검토
- 펌프장 설치 필요시 형식(흡수정 또는 인라인) 및 용량 산정, 시설 계획

#### □ 도수관로 수충압 검토

- 적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수관로 수충압 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수충압 설비 제시

#### □ 용수공급시설 기술검토 (수리 및 용량 검토 포함)

- 확정된 용수공급 시설 최적안에 대하여 기술검토 시행
- 취수장 및 도수관로, 정수장 수리 검토
- 취수장 및 정수장 단위 구조물 시설 용량 검토

#### □ 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

- 사업비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비, 설계비, 조사비 및 감리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제비용 포함
- 운영비는 시설물 및 공종별로 구분하고 산출기준을 제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기구, 운영방법, 소요장비 및 시설에 관한 방안을 수립하고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

#### □ 사업수행 계획 (예비 사업참여자 수행분)

- 현장조사 지원
- 공사수행계획 수립 및 공정표 작성
- 전체 공사비 제시
  - : 주자재 물량 개략산출 및 금액 적정성 검토 포함
  - : 제세공과금, 보증, 보험, 경비 등 공사관련 원가항목 및 산출기준 포함

#### 4) 재무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 관련자료 조사

- 재무분석을 위한 거시경제 관련 자료 조사 (국공채 금리, 사회경제적 할인율, 환율, Inflation rate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처리규정 및 제반 자료 조사 (세무상 감가상각, 법인세, 부가세 등)

##### □ 총투자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에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 등을 산출하여 총투자비 산정
- 정부보조금 및 출자금, 금융시장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재원조달계획 수립

##### □ 재무적 타당성 분석

- 본 사업의 사업모델 제시(투자회수구조 제안)
- 사업수지 및 기간별 현금흐름 추정
- 현금흐름의 안정성 및 투자수익성 검토 (DSCR, IRR, NPV 등)
- 세무, 회계 관련법이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
- 본 사업 SPC,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시공관련 Tax 관련 지원 및 규제사항 검토 (법인세, 부가세, 원천징수, 이월결손금, 인지세 등)
- 목표수익률 산정
- 민감도 분석 및 시나리오 분석(사업비, 수요, 운영비, 이자율 등 변화에 따른 정부지급금 분석, 발주방식 등)
- 최종 사업구도 및 비즈니스 모델 제안

##### □ 재무적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외국환 거래 관련 절차 및 제한 검토
- 환율 변동 및 환전 Risk 헷지방안 외국 사례 검토 및 제시

- 유사 사업 재원조달 사례 분석 등 위 사항 외 기타 필요한 사항

####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전 생애기간(Life Cycle Period) 동안에 예상되는 순 편익 및 효과 검토
-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분석
- 경제성 분석의 전제조건 검토(공사기간, 사업의 생애주기, 할인율 등)
- 비용추정(공사비,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 경제성분석(비용/편익 분석, B/C)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민감도 분석 등
- 경제성 분석 결과 제시
- 기타고려사항(대체투자비 및 잔존가치의 처리, 세금 등 이전지출 처리 등)

#### 5) 법률적 타당성 분석

#####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검토

- 발주방식에 대한 현황자료 분석
- PPP 입찰 절차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검토
- 토지보상·이주 관련 법률 검토
- 용수공급시설 운영 관련 법률 및 중앙정부, 지자체, 발주처 간 업무분장
- 용수공급비용의 결정 및 수령, offtake 계약 관련 검토
- 환경, 사회영향평가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 노동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노사 문화, 현지인 고용 관련 이슈 등)
- 방글라데시 법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및 법 집행 효율성 검토 (분쟁발생 시 방글라데시 법원을 통한 해결 가능성, 해외 중재판정 등의 방글라데시 내 집행가능성 등)

#####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검토

- 방글라데시 용수공급시설 관련 PPP 법률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권한, 제약(Negative List) 등 외국환거래, 투자금 회수, 세제 관련 쟁점 검토
  - 용수공급시설 건설·운영·유지보수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법성
  - 국적 요건
  - 외국인 투자 우대 및/또는 규제, 제한 정책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식 등)
  - 해지시 지급금과 판결/중재 보상 관련을 포함한 외국환거래 관련 제한 및 절차 (가용성, 전환성 및 이송가능성; 외국환 거래 신고 등)
  - 세제 및 금융상 혜택 및 제한, 과실송금, 이중과세, 이익배당, 현지인 채용, 고용제한 등
  - 타인자본 지급보장 등 투자자 보호장치
  - 해지시 지급금 수취절차 및 산정 방법
  - 프로젝트 양도에 관한 체제
  - 기타 투자 인센티브

#### □ PPP 제도/법률 현황 검토

- PPP 사업 추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관련 법제도(PPP Law) 검토
- AP 방식의 용수공급시설 민자사업 관련 법률 검토
- 방글라데시의 PPP 실시협약 사례 검토를 통한 사업주 위험 분석
- PPP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기타 혜택 검토
- 본 사업 계약과 관련된 현지 법규 조사 및 검토
- 용수공급시설 관련 AP적용에 대한 내용 검토
  - 용수공급시설 AP방식 내 민간 사업자 권리 보호 방안
  - 사업 시행자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관련 제안 내용 마련
  - 용수공급시설 AP적용 PPP사업 민간 제안 방식 또는 가점 부여 방안 검토
  - 방글라데시 정부/공기업의 민자사업 보증 또는 지원제도 분석 및 개선 방식 제안
- Termination payment 관련 규정 및 유사사례 검토

- 주무관청과의 분쟁조정 사례 검토
- 외국인 투자 제한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식 등) 검토

□ SPC 설립 관련 규정, 절차 및 준비사항 검토

-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형태 및 설립절차
- PPP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법인 또는 지사 설립방안
- 최소자본금 규정, 고용제한, 법인소득세율, 대출금 및 자본 비율 등
- 제반 인·허가 관련 기관 및 예상 소요 기간 및 절차

□ 각종 인허가 및 규제사항 사항 검토

- 사업지역의 환경규제에 대한 검토
- 직접 혹은 하청업자에 의한, EPC 및 O&M의 용수공급사업 영위를 위한 면허 취득 요구사항 검토
- 건설 및 장비보급에 대한 검토
- 용수공급시설 공사 및 운영 필요 인·허가

□ 법률적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상기 검토를 통한 주요 위험요인 사전 분석 및 대응방안(Hedge) 수립 제시

※ 법률분야는 경험있는 글로벌 및 Local社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것을 권장

□ 대주단 투자 유치를 위한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6) 사전환경사회영향검토

□ 사전환경영향검토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법령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 조사 (자연 환경 보전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 방글라데시의 환경기준,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방글라데시 환경영향 평가 제도 및 절차 분석
-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 예측 및 보전·저감 방안 수립

#### □ 사전사회영향검토

- 기초조사, 자료분석 및 지적·측량조사 결과 분석, 토지소유권 및 보상기준 검토, 소요예산 검토 등

### 4. 과업의 일반원칙

#### □ 자료활용

-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 □ 과업수행원칙

- 최종낙찰자(이하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 법률, 기술,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 위탁금액, 위탁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외부전문기관 포함)가 부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여야 함.

#### □ 과업의 변경

-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일반조건

-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 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영수증 등)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

#### □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제안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성과물 작성

-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해야 함
-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 양식,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함.
- 공정보고, 현지조사,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 기 타

-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

## 5. 과업수행 방법

### □ 전문가 자문

-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자문회의,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

### □ 현지조사

- 사업대상국의 인문, 자연, 경제,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 조사자(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
-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

-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

## 6. 과업성과품 제출

###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과업참여자 명단,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단,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최종보고서,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수정보고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수정보고서, 수정 참고자료,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7.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규칙 제54조(외부용역 발주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별첨)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 II. 예정공정표

항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비고
1. 기초자료 조사		■					
2. 현장조사		■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					
4. 재무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5. 법률적 타당성 분석			■				
6. 사전환경성 검토					■		
7. 성과품 작성						■	
보고회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과업 진도율	당기	15	25	25	20	15	
	누적	15	40	65	85	100	

##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귀하